KOSHA GUIDE

M - 140 - 2012

프레스의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충 렬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2008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: 레이저를 이용한 프레스 방호장치 개발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3절 제103조(프레스 등 의 위험방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프레스의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3절 제103조(프레스 등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따라 프레스의 감응식 방호장 치 중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프레스의 감응식 방호장치 중 레이저방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방호장치"라 함은 위험기계로부터 작업자 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토록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.
 - (나) "레이저"이라 함은 방호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말하다.
 - (다) "레이저빔"라 함은 레이저방식의 방호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에 의하여 발생되는 광선을 말한다.
 - (라) "투광부"라 함은 레이저에서 빔을 방사하는 장치부분을 말한다.
 - (마) "수광부"라 함은 레이저 방사에 의한 빔을 받아서 방호장치의 작동이 가능 하도록 하는 장치부분을 말한다.
 - (바) "반사판"이라 함은 레이저 방사에 의한 범을 반사시키는 판을 말한다.
 - (사) "방호장치 고정부"라 함은 방호장치를 프레스 하단부 좌우측 몸체에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.

KOSHA 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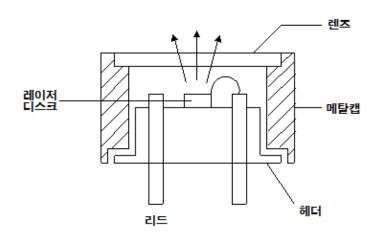
M - 140 - 2012

- (아) "피폭방출한계(AEL, Accessible emission level)"라 함은 설계 또는 의도 된 용도에 고유의 적용하는 파장 및 노광지속시간에 대한 피폭 방출한계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방호장치 원리 및 구조

4.1 방호장치의 원리

- (1) 레이저빔이 일직선으로 집중된 단일파장의 광선을 방사하고 수광하게 하여 인체가 위험영역에 들어가면 이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방호장치가 구동되게 하는 원리이다.
- (가) 레이저방식 방호장치는 레이저빔의 특성인 단일파장을 이용함으로써 레이저빔의 회절과 간섭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방호장치의 발광부에서 방사되는 빔을 단지 원하는 수광부에만 감지하게 하여 오동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능을 갖게 된다.
- (나) 반도체레이저의 특성상 <그림 1>과 같이 렌즈에 의하여 에너지가 집중 됨으로서 레이저빔이 방호장치의 수광부에 조준되어 적절하게 감지되도 록 함으로서 방호장치의 기능이 확보된다.
- (다) 방호장치에 레이저의 단파장을 이용함으로서 외부 광선 및 전자파에 의하여 기존의 감응식 프레스 방호장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할수 있다.



<그림 1> 렌즈가 부착된 반도체 레이저의 구조

4.2 방호장치의 구조

- (1) 레이저 방식 방호장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레이저빔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발생부
- (나) 레이저빔을 수광하는 레이저 수광부
- (다) 방호장치의 구조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지지부
- (라) 방호장치의 기능 작동을 위한 제어부
- (2) 방호장치의 감지기능을 갖기 위한 레이저는 1급 피폭방출한계를 넘은 피폭 레이저방사 레벨을 방출할 수 없는 <그림 1>과 같은 제품의 반도체레이저 를 사용한다.
- (3) 방호장치의 각 부의 기능을 연결하는 제어부는 90 V~230 V의 전압을 받아서 DC 5 V로 전환하여 방호장치를 작동시킨다.
- (4) 방호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점검을 위하여 점검기능을 갖는다.

5. 방호장치의 설치 방법 및 기준

KOSHA GUIDE

M - 140 - 2012

5.1 일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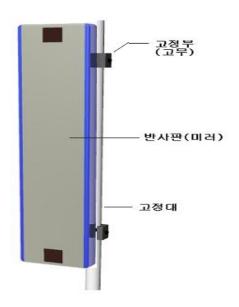
- (1) 방호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고정부를 고정시킨다.
- (2) 설치되는 레이저방식 방호장치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노동부고시 제2003-18호 (유해·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 정) 제3편 (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)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, 불량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방호장치의 반사판은 프레스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위험영역의 방호면을 사이에 두고 레이저가 상호 반사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(4) 안전거리 등 일반적인 방호장치의 설치조건과 방법은 기존의 유해·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(노동부고시 제2003-18호)에 따른다.

5.2 방호장치의 고정방법

- (1) 방호장치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기타 자재(강재)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로 사용한다.
- (2) <그림 2>의 방호장치의 고정부 부분은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진동에 의하여 반사판의 고정된 방향이 변동될 수 있다. 따라서 방호장치 고정부의 볼트 가 진동에 풀리지 않도록 체결하여야 한다.
 - (3) 방호장치의 설치위치는 프레스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능하면 프레스 하부의 몸체에 부착시켜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5.3 레이저빔의 조정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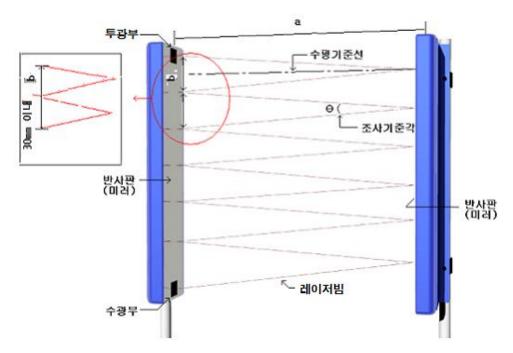
(1) 방호장치의 설치 시 <그림 3>에서 같이 방호장치 양쪽의 반사판을 일직선 위에 마주보게 하여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2>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고정부

- (2) 방호장치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레이저의 정확한 조준을 통하여 범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(3) 방호장치의 설치 시 <그림 3>과 같이 안전한 작업조건을 형성하도록 위험 영역을 방호하기 위한 방호장치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레이저빔을 방사하는 투광부, 레이저빔을 수광하는 수광부 및 방사된 레이저빔을 반사하는 반사판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투수광부반사판과 반사판만 설치되어 있는 반사판은 지면과 수직상태로 설치되어야 한다.
 - (나) 레이저 투광부에서 방사되는 레이저빔이 반사판에 반사되어 투광부면에 부착된 반사판에 다시 도달된다. 이 때의 투광부에서 방사되는 레이저빔 과 투수광부반사판에 도달되는 레이저빔의 지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최대로 벌어진 부분의 레이저빔의 사이간격을 b로 정한다. 이때 b는 기존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검정기준인 연속차광폭 30 mm의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.

a: 방호장치 반사판 사이간격 b:최대폭부분 광선 사이간격



<그림 3> 프레스의 레이저방식의 방호장치 설치도

(다) 방호장치 설치 시 방호장치의 투광부에서 조사 및 반사판에 반사되어 최 종으로 수광부에 도달된 레이저빔은 수광부 조준면의 중앙부분에 조사되 도록 한다.

6. 설치 시 주의사항

설치작업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.

- (1) 설치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은 가능한 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한다.
- (2) 방호장치의 설치 시 프레스의 작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서 프레스에 안전블록을 설치하여 작업을 한다.

- (3)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작업자의 눈이 레이저빔과 지속적으로 마주치지 않 도록 주의사항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방호장치에 프레스 진동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무홀더 등의 방호장치 부재들이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(5) 프레스 등의 기계설비로부터 누출되는 기름 등의 이물질이 작업도중 방호 장치의 반사판에 붙게 되어 방호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(6) 프레스 작업 시 충격량이 큰 크랭크 방식의 대형프레스일 경우에는 방호 장치의 설치 시 진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. 차후 진동으로 인하여 방호 장치의 설치상태가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안정한 조건에서 지속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진동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부재를 활용하여야 한다.
- (7) 프레스의 작업 시 설치된 방호장치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레이저빔이 조준 되는 수광부의 정 중앙에 조준되게 하여 지속적인 프레스 작업 후에도 레 이저빔이 수광부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.
- (8) 프레스 작업도중 발생되는 진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방호장치 지지부의 위치가 변동되어 방호장치의 수광부에 레이저빔이 수광되지 않아서 프레스 작업이 중지되지 않도록 고정볼트가 확실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한다.
- (9) 방호장치 주변 전자파 등의 잡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장치의 제어부가 차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(10) 레이저는 1급 피폭방출한계를 넘은 피폭레이저방사 레벨을 방출할 수 없는 제품(KS C 6701)의 반도체레이저를 활용하여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작업과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작업자의 눈이 레이저빔과 지속적으로 마주칠 경우 안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